

장애인가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산제품의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ublic
purchase system for competitive Advantage
of the Disability Firm

원준호*·송수정**·강경식*

Jun-Ho Won*·Soo-Jeong Song**·Kyung-Sik Kang*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가기업이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고 장애인가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애인가기업 생산물품 구매 활성화 방안 모색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가기업 생산품 구매촉진 방안 및 정책 제언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Keywords : public purchase system, disability firm

1. 서론

중소기업은 우리 국가경제의 뿌리이며,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할 책무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 그만큼 중소기업은 우리에게 소중한 재산인 것이다. 건실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다양한 기업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보다 좋은 품질의 상품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기술개발 활동도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결국 기업에 있어서는 열심히 개발하고 생산한 상품을 적기에, 적절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만이 이익을 창출하고, 경영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명지대학교 안전경영연구소 협력에 의해 이루어진 논문임

*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 신성대학 물리치료과

이러한 점에서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하여 주고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판로지원 정책은 최종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판로지원에 있어서 민간분야에의 지원은 브랜드 개발지원이나 신제품, 우수제품의 홍보지원 등에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직접적인 판매지원은 지나친 시장간섭이 될 수 있기에 다소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소기업청에서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제도(약칭 공공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2007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의 애로사항은 자금조달 32.1%, 마케팅 16.8%로 나타나, 자금조달 및 판로개척에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실제 기업경영에서 자금 수혈은 마케팅 부분이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마케팅의 어려움이 자금 압박 등의 악순환 구조로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인식부족으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기업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장애인기업 생산물품 구매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2008년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일부 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생산물품 구매촉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장애인기업이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고 장애인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생산물품 구매 활성화 방안 모색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촉진 방안 및 정책 제언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2. 이론적 고찰

2.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정부 등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상품의 구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성립되고 있다. 정부 등 공공기관이 계약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민간 부분에서의 계약행위와는 매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민간에 있어서는 ‘계약’이란 대부분 “개인과 개인(여기서의 개인은 법인까지를 포함한다) 당사자 간의 어떤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상호간 반대 방향의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민법상의 법률 행위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한다. 즉, 특정 상품을 팔겠다는 의사와 구매하겠다는 반대의사가 합치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하며, 대부분의 계약이 이에 속한다. 통상사인간의 계약의 경우에는 민법을 적용하여 “계약 자유의 원칙”과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국가 (또는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를 일방의 계약 당사자로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다양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즉, 계약을 희망하는 모든 자에게 평등한 기회의 제공,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복잡한 제한과 절차 등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행정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산하기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함)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함)을 중심으로 예규, 지침, 조례 등 매우 많은 법률로 정해져 있다.

2.1.1 중소기업제품 공공제도의 의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정부 등 공공기관이 소요로 하는 물품이나 공사 및 용역 등을 구입함에 있어 가능한 한 중소기업과의 계약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금력과 영업력 및 브랜드 인지도 등에서 열세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판매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단이다. 이러한 공공구매 지원 정책은 기업의 최종 산출물인 제품과 서비스의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그 효과가 생산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고용과 원자재 구매확대 및 기술개발로 이어지는 경제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한다는 공적 측면을 가진다. 특히, 공공구매지원 정책은 정책자금 지원 등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금융정책이 생산의 증가 없이 자금공급을 확대시킴으로써 인플레이현상을 유발하는 등 부정적 효과를 동반하는 것과 달리 중소기업이 생산·공급한 제품과 서비스의 대가로 적정수준의 자금을 유통시킴에 따라 불필요하게 시장이 교란되는 등의 부작용 없이 중소기업 지원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우리 정부의 공공구매 규모는 연간 100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규모로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부양시키거나 지나치게 활성화 되어 있는 경기를 안정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한국중소기업학회에서도 “정부조달은 그 규모가 일반적으로 GDP의 10~1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 기간산업에 필요한 자재의 조달이나 건설의 상당 부분이 정부의 영향력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 구매의 형태는 특정산업의 보호·육성, 기술개발 등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조달시장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평가한 바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등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경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결제 받는 한편, 민간 거래와 달리 계약 상대방이 당초 계약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함에 따라 거래조건이 유리하며, 이러한 공공기관 납품실적은 민간시장에서의 판로개척에는 물론 해외시장 개척 시에도 높은 신뢰도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의를 가진다. 지금까지 정부가 시행해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는 1965년도부터 도입하여 2006년까지 시행된 단체수의계약제도와 최근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크게 요약할 수 있다.

2.1.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주요 내용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

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총칭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제도 운영요령에서 주요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제도, 공사용자재 직접(분리)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제도, 직접생산확인 제도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2.2.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의 국내·외 정책

2.2.1 미국

미국의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 운영의 목적은 미국 중소기업이 연방정부에 대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미국 의회는 미국 중소기업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이 정부조달의 공정한 비중을 확보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주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공정 비율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국가경제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짐을 확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지원은 중소기업청이 동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게 연방조달 참여 촉진을 위한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고 미 상무부는 매년 북미산업분류(NAICS)의 산업 하위부문(industry subsector)과 지역에 의하여 인정된 중소기업 조달 기법(mechanism)과 적용 가능한 요소(비율)를 결정한다.

(1) 정부조달 관련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 ① 중소기업 할당제도(Small Business Set-Asides)
- ② 사회적 약자 중소기업 우대제도(Small Disadvantaged Business; SDB)
- ③ 중소 사회·경제적 약자기업에 대한 가격평가 우대(Evaluation Preference for SDBs)
- ④ 계약이행능력증명(Certificate of Competency: COC) 프로그램
- ⑤ 중소기업 혁신 연구 프로그램(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SBIR 프로그램)

2.2.2 영국

영국 재무부 회계 지침에 따르면 영국의 정부조달 정책은 금액대비 가치(Value for Money : VFM)의 극대화를 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지원정책보다는 간접 지원시책 마련하여 10만 파운드 미만 소액조달에 대한 범정부 포탈사이트 구축(2006년) 또한, 공공구매자들이 용이하게 중소기업을 심사하여 계약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사전자격심사질문서(A simplified national Pre-qualification Questionnaire : PQQ) 보급하였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지방정

부가 보장해 주는 “소기업 친화적 협약(Small Business Friendly Concordat)”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성을 유지하여 공공비용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달성이 목표로 하고 있다.

(1) 정부조달 관련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 ①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조달 포털 웹사이트 운영
- ② 중소기업 공공조달 의견수렴 웹사이트 운영
- ③ 조달 협약(Procurement Concordat)

(2) 영국의 장애인관련기업 지원 구매제도

장애인관련기업 지원에 대한 규정은 공공계약규정 2006(The 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06)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EU 신공공조달지침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음

- ① 특별계약협약(Special Contract Arrangements: SCA)
- ② 유보계약(Reserved Contract)
- ③ On-line Supported Business Directory

2.2.3 EU

EU에서는 EU국가 내에 물자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하여 무차별 대우, 자유로운 공개경쟁, 투명한 경쟁절차가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정규모이상(EC Threshold 금액 이상)의 공공조달을 할 경우엔 EU국가 기업들의 공개경쟁이 가능하도록 EC의 관보라고 할 수 있는 OJEC(Official Journal of European Community)에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에게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조달제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EU에서는 중소기업에 지원제도를 통한 혜택이 아닌 경쟁성의 원칙 하에서 공공조달시장의 진출을 저해하는 장벽을 낮추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유럽위원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EU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로 부족한 정보, 높은 거래비용, 부적절한 요구조건, 복잡한 절차 등으로 나타나 주로 행정상의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유럽중소기업협의회(UEAPME)에서는 EU 공공조달 개선을 위해 2007년 상기에서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입찰을 업무별 혹은 지역별로 소규모 분리 발주, 극소 규모계약에 대한 직접적 구매의 적극 장려

둘째, 계약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고 지정된 인터넷 포털과 표준화된 ‘전자조달(e-procurement)’ 절차 마련

셋째, 자격조건이 동등한 기업들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입찰 제안의 품질을 높이고 입찰 기관의 평균비용 감축

넷째, 중소기업의 협상력 약화에 대한 보상과 공정한 처우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직접 공공조달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장려

2.2.4 일본

일본은 국가, 독립행정법인 등의 조달에 대하여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 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공수(官公需)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 ①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 증대를 위한 조치
- ② 중소기업 관공수 특정품목 등의 발주정보 등의 제공 및 수주 기회 증대
- ③ 관공수(官公需) 적격조합 등의 활용
- ④ 계획적인 발주 추진 및 노동시간 단축에의 배려
- 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수주 기회 증대
- ⑥ 신규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 증대를 위한 조치

또한, 중소기업자의 외상판매 채권을 담보로 한 자금조달을 통해 새로운 수주 기회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외상판매 채권의 양도금지 특약 해제 등의 조치로 외상판매 채권담보융자보증제도 활용, 하청안정망(Safety Net), 채무보증사업 등의 이용을 촉진시키고 있다.

2.2.5 한국

한국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근간이었던 단체수의 계약제도가 폐지되고, 이의 대체제도로서 '06년부터 구매목표비율제, 중소기업자간 경쟁의무화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직접생산확인제도, 규모별 경쟁제도,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성능정부인증제도, 성능보험제도,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 시장경쟁을 촉진시키는 10여 가지 제도<그림 2-1>로 구성된 새로운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가 출현되어 특히, 성능정부인증 및 성능보험제도,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등으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림 2-1> 현행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3. 정책제언

3.1 공공구매제도 관련 정보 및 홍보 강화

대부분의 장애인기업들은 현 공공구매제도 자체에 대한 정보 및 홍보 부족으로 참여율이 저조하다. 1,000개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05~'07년) 공공기관에 납품 경험이 있는 장애인기업은 24.2%(242개)으로 나타나, 납품 경험이 없는 장애인기업이 75.8%(758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납품 경험이 없는 장애인기업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공공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구매제도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공사용자재 직접(분리)구매 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등을 알고 있는가를 문의한 결과, 각 제도에 대한 인지율이 80.6%, 90.5%, 83.2% 등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에 납품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장애인기업들이 공공구매제도를 거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고 한다.

이에 공공기관에 납품 가능한 장애인기업들을 중심으로 공공구매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정보 및 홍보” 강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보 및 홍보 강화 방법으로 공공구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교육·훈련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나, 장애인기업들은 교육·훈련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을 감안하여 공공구매제도의 정보 및 홍보 강화 방법을 달리 구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여러 형태의 정보 및 홍보 제공 방식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 : Off-Line상의 장애인기업을 위한 공공구매제도의 책자 제작 및 배포, 영국 사례와 유사하게 On-Line상의 장애인기업 전용 공공구매 사이트 구축(조달청 나라장터 장애인생산품 전용 사이트와 유사))을 신설하여 장애인기업들이 공공기관 납품에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 확보 등).

또한 장애인기업의 판로 촉진을 위한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교육은 On-Off Line 병행되어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그 훈련은 지속적이고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3.2 행정절차상의 편리성 향상을 위한 시책 개발

공공기관에 납품 경험이 있는 장애인기업들(242개)의 공공기관 납품시 주요 애로사항은 “까다로운 서류준비(14.6%)”로 행정절차(서류 준비 및 작성)상에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역량 있는 장애인기업들이 공공기관에 납품시 행정상의 서류 준비, 작성 및 제출 등에서 애로를 경험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위에서 이미 논의한 영국 사례 등과 유사하게 On-Line상의 장애인기업 전용 공공구매 사이트를 통해 장애인기업이 서류 준비, 작성 및 제출 등에서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3 역량 있는 장애인기업 발굴 및 공공구매 지원 강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을 받지 않은 기업들(577개)의 공공기관 납품 경험은 10.2%에 머물러 있으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기업들(423개) 중 공공기관 납품 경험이 있는 기업은 43.3%이어서 확인서 유무에서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특히, 확인서를 발급받은 법인 및 개인 사업자 중 법인의 공공기관 납품 경험이 60.3%였고, 개인은 30.1%로 나타나 2배 가량 법인 사업자가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제도는 정책적 실효성을 다소 확보한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확인서를 보유한 장애인기업들을 중심으로 공공구매제도에 관한 정보 및 홍보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이거나, 미래에 진행될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등에서도 공공구매제도 등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 등은 사회적 약자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어, 선행적으로 시행된 여성기업 관련 공공구매 시책과 유사하게 장애인기업들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 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여성기업들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여성기업 우선 수의계약”, “가점부여” 제도 등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장애인기업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장애인기업을 위한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으로 “가점부여”, “지역소재 업체의 생산품 우선구매”, “지역 제한 경쟁입찰”, “일부 수의계약”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3.4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상의 공공기관 구매촉진(제9조의2) 조항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관련 장애인기업의 생산품은 총 949개(빈도수 기준)이며, 이들 중 장애인생산품과 동일하게 생산하는 물품은 200개(빈도수 기준)로 나타나 21.1%로 분석되어, 장애인기업 생산 물품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물품”과 다소 중복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에 상호간 양립(상생)될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정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서 논의되는 제9조의2(공공기관의 구매촉진)의 ②에서는 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장애인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품목을 제외한다), 장애인생산 물품을 제조하는 장애인기업들의 판로에서 애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장애인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본 조항(「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품목

을 제외한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은 대안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내의 본 조항을 그대로 존치시켜, 개별 공공기관들이 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비율(5~20%이상)내에서 더 이상으로 물품을 구매하지 못할 경우, 잔여 비율에 대해 장애인기업 생산 물품을 구매하는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한다. 이를 위해 본 조항을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품목을 제외하나, 공공기관들의 필요시 장애인기업 생산품도 구매하도록 한다.” 등으로 제9조의2(공공기관의 구매촉진)의 ②조항을 수정·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앞서 논의한대로 상호간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본 조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경우, 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하는 장애인기업 물품을 동일시하여 장애인기업 생산 물품에 대한 구매 목표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예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비율 조정은 이해관계자들의 협의에 따름). 즉, 본 조항을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품목을 생산하는 장애인기업 생산 물품의 목표 비율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물품 구매비율의 100분의 30 이상 비율(조정 가능)로 구매하도록 한다” 등으로 수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궁극적으로는 경쟁제도의 도입을 통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내 본 조항의 삭제제를 통해, 장애인기업 생산 물품과 장애인생산품간의 품질 경쟁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자유롭게 구매하도록 하여, 고품질의 생산품이 제조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철회는 여러 이해당사자들간의 관계와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경우, 이의 수용 여부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3.5 장애인기업의 R&D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부분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이용률은 저조하여 장애인기업의 R&D 역량 제고에 대한 지원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장애인기업들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이용한 비율은 5.4%(13개 기업)로 나타났고, 이들 중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기술개발제품 유형은 4가지로, “성능인증제품” 46.2%, NEP제품 30.8%, 우수조달제품 30.8%, NET제품 7.7%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인증하는 5개 제품 유형들 중 GS(소프트웨어품질인증)제품으로 인증 받은 장애인기업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실태조사의 대상인 1,000개 장애인기업들의 R&D 투자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기업 스스로 R&D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장애인기업이 최근 3년간 R&D 투자 비용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2005년 13.91백만원에서 2007년 20.65백만원으로 '05년 대비 '07년은 48.5% 증가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장애인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용 비율은 2005년 2.18%, 2007년 2.68%로 그리 높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정부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장애인기업들은 기술개발제품 인증 후 수요처 공공기관의 신뢰도가 상승하였고(5점 평균: 4.08점), 구매비율의 증가(3.69점)하였다고 응답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R&D 관련 정부 지원 방향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들 중 일부를 지원받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방법, 둘째,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 장애인기업 전용의 R&D 지원사업을 새로이 신설하는 방법, 셋째, 지자체 등과 연계된 장애인기업의 R&D 역량 강화 및 종합적 지원사업 등을 구상하는 방법 등을 제안한다.

4. 결 론

국가경제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필수적이다. World Bank(1994, 2002, 2004)의 견해에 따르면,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중소기업은 경쟁과 기업가정신을 더하여 경제의 전반적인 효율성, 혁신, 생산성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둘째, 대기업보다 더 생산적인 중소기업이 있지만 시장이 중소기업에게 자원을 제대로 배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직접 중소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면 경제 성장과 발전을 가속화한다. 셋째,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확대는 고용을 증대시킨다.

또한, 중소기업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루면서 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비대칭, 불완전 경쟁시장 등에 기인한 시장실패로 인하여 시장기능 속에서 충분한 자생력을 갖기 어려운 약점을 지니고 있어 일정 범위 내에서 공공부문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 중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제도는 시장에서의 직접적인 개입에 따른 정부실패의 위험이 큰 다른 정책이나 시책과는 달리 정부실패의 위험이 크지 않으면서 연간 100조에 달하는 공공기관들의 구매예산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판로확대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시책이라 할 수 있다. 즉,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참여확대는 시장실패를 보완하여 창업영세기업의 판매증대를 통한 성장의 발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미, 영, 일 등 세계 각국들은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참여확대를 촉진해오고 있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당위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장애인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생산물품 구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구매제도 관련 정보 및 홍보 강화, 둘째, 행정절차상의 편리성 향상을 위한 시책 개발, 셋째 역량 있는 장애인기업 발굴 및 공공구매 지원 강화, 넷째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상의 공공기관 구매촉진(제9조의2) 조항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 다섯째, 장애인기업의 R&D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 등이다.

5. 참 고 문 헌

- [1] 김광희, 공공조달시장의 경쟁성 제고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 [2] 보건복지가족부, 200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2007
- [3] 이인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 [4] 주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 개선방안, 산업연구원. 2001
-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
- [6] 한국중소기업학회,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합리화방안 2004
- [7] 미국 중소기업청, <http://www.sba.gov/>
- [8] 영국 중소기업청, <http://www.sbs.gov.uk/>
- [9] 일본 중소기업청, <http://www.sme.ne.jp/>